

동 지침은,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“심각”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강화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(2판)(‘20.2.26 시행)에 근거하여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2판)(‘20.2.21 既 시행)을 수정·보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(3판)

2020. 2. 26

보건복지부

목 차

I. 목적 및 기본방향	1
1. 목적	1
2. 기본방향	1
II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	2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	2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	2
3.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	4
4.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	5
5. 시설 휴관(원) 시 조치사항	6
6. 행정사항	7
III. 지자체 협조사항	7
▷ 붙임 ◁	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민행동수칙	8
2. 감염병 예방수칙(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)	9
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 포스터	10
4.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	12
5.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	14
6.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(요약)	15
7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신고 대상	16
8. 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(임상증상기록지)	17
9. 접촉자 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(임상증상기록지)	18
◁ 참고 ▷	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관련 정보	19
2. 사회복지시설 종류	20

I 목적 및 기본방향

1. 목 적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(1.20.),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(2.24., 경계→심각)

- 사회복지시설*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

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(참고1)

***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 요양기관 포함**

◆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증상

발열, 기침, 인후통,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, 폐렴,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로 진행될 수 있음

-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(이하 '관리자')의 역할 등을 제시함

2. 기본방향

- 다수인이 이용(생활)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리 체계”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, 시설 종사자,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

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 제8호 :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필요한 조치 의무화

-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(의심환자 포함) 발생시 즉시 관찰 보건소에 신고하고,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

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-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*(시도,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)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

* 시군구청내 시설 소관부서-관내 보건소, 인근 선별진료소

- 사회복지시설 내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'를 지정하여 시설이용자, 종사자, 기타 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
-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 수칙, 행동요령 교육
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
-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

- 출입 시 사전 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

- 시설 입소·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

-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 후 입소·출입 안내
- 시설 이용자·입소자·종사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(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) (붙임 8)

⇒ 시설 내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, (1)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, (2)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((1)+(2):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), (3)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

- 다음과 같은 직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
-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
-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, 자택에서 3~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

⇒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, 보건소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으로 문의,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

◆ (참고)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[유증상자]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,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, 보건소(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② 코로나19 발생국가·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2주간
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
※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, 여행최소화 권고 국가, 국내 유행지역

-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,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

* (예시) 근로자 :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/ 어린이, 학생 등 : 결석시 출석 인정

- 시설 관리자 등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

-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, 노인, 임산부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

□ 시설이용자,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·홍보

-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
- 시설 이용자·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[붙임 1~3] 및 각종 홍보물*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

*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

□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

-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, 손 세척제(비누,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
 -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 -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
 -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
-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
 - 특히,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*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
 - * 기저질환자(만성폐쇄성폐질환, 심혈관질환 등) 및 65세이상 노인·영유아·임산부 등
 - 시설 내/외부 소독,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
-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
 - 종사자,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
- 의심환자 발생시,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
 - 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
3.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

-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
 - * 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증상)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, 폐렴,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
 -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(1인 1실)에 격리,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, 전용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하기
-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,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,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
 - * 보건소 도착 전,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

- 입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시·도(보건소)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
 - *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,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
-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
-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,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
- 접촉한 입소자·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(붙임 9)
 -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
 -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
 - 단, 체온이 37.5℃이상이거나,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,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
 - *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

4.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

□ 시설 입소자의 면회·외출·외박 제한

- 면회·외박·외출은 될 수 있는 한 금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면회 허락 시 면회시간 설정과 별도 구분된 면회장소 지정 → 가족 등에게 안내(SMS, 유선전화 등)
- 불가피한 경우 별도 구분된 면회장소를 지정하고 입소자와 면회자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,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시
- 불가피한 경우로 외출, 외박 후 시설 복귀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,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여부 확인

□ 이용자,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

-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,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충분한 손씻기)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
- 최근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이나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이 있는 경우 시설을 이용(방문)하지 않도록 안내
- 외부인 방문 제한(방문시간 지정, 예외적 방문 허용사유(가족 한정 등) 특정, 방문자 위험요인 관리, 이용자/방문자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의무화(책임자 지정)

□ 행사 또는 교육

-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
 -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발열, 호흡기 증상 또는 최근 여행력*이 있는 참석자 및 주최기관 종사자의 경우 행사 참석 제한
 - *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여행 최소화 권고 국가, 국내 유행지역
 -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, 참석자 마스크 착용,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, 예방행동수칙 부착(참여자 인원수에 따라 발열 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) 등 조치 선행

5. 시설 휴관(원) 시 추가 조치

□ 휴관(원) 시,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유지 방안 마련·운영

- * 아동(도시락, 식사지원 등), 노인(안부전화, 도시락 등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
- 「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지침」(‘20. 2. 21. 既 배포)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
 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41(2020.02.21.) 既 시행

6. 행정사항

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

- (유급휴가 처리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·격리기간 동안 '유급휴가' 처리(20.1.30. 시달)
- (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'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'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(20.1.29. 공문시행)

Ⅲ 지자체 협조사항

- (현장지원)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, 수행기관 업무 지원 확대 필요
- (연락체계 구축) 사회복지시설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
- (시설휴관)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- (격리시설 마련)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(1인실 원칙)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
붙임 1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민행동수칙(심각단계)

☑ 일반국민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☑ 고위험군(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)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☑ 유증상자(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)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 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☑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





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1 손바닥



2 손등



3 손가락 사이



4 두 손 모아



5 엄지 손가락



6 손톱 밑



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1 휴지나
손수건은 필수



2 옷 소매로
가리기



3 기침 후
비누로 손씻기

발행일 2019.11.5.

- 9 -

붙임 3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 포스터





꼭!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

국민 예방수칙



흐르는 물에 비누로
꼼꼼하게 손씻기



기침이나 재채기할 때
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
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

발열, 호흡기 증상자와의
접촉 피하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
마스크 착용하기



사람 많은 곳
방문 자제하기

유증상자* 예방수칙 *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

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
외출 자제하기



3~4일 경과를 관찰하며
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



38°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
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,
관할보건소 문의 및
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
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



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
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



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
외출,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
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
지시 철저히 따르기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정보는 [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.mohw.go.kr](http://ncov.mohw.go.kr) 에서 확인하세요!

발행일: 2020. 2. 25

- 10 -

자가격리대상자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
- ✓ **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**
* 특히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! * 외부인 방문 제한
- ✓ **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**
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
- ✓ **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**
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
- ✓ **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**
- ✓ **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 구분하여 사용하기**
*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*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
- ✓ **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**
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
- ✓ **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**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주요 증상

- ✓ 발열(37.5°C 이상)
- ✓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- ✓ 폐렴

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**당당히** 말해주세요!

해외여행 후,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
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
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.

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!!



☑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

◆ **환자 노출 장소**는 다음 지침에 따라 **소독을 실시**한 후,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**장소 사용 가능**

*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,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(소독제 설명서에 따른 사항 준수)

-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,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
- 청소/소독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
-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
- 천(타올)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
 - *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소독 방법 금지
-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(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(500ppm~1000ppm))
-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*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
 - * 엘리베이터 버튼, 손잡이 레일, 문 손잡이, 팔걸이, 등받이, 책상, 조명 조절 장치, 키보드, 스위치 등
-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
-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, 직물,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
-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, 베개,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
-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
-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* 를 소독하고, 천(타올)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/소독 장비는 폐기
 - *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
-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

<참고>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감염 예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(2판)
(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, '20.2월)

☐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

< 신고 대상 >

1.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2. 최근 14일 이내에 **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** + **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**
3. 최근 14일 이내에 **확진환자와 접촉한 자** + **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**
4. **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**
5. 최근 14일 이내에 **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* 방문** + **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**
6. **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***

* 지표출처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자차체용, 제6판), 질병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

※ 사례)

- 1)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 국가·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3)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
- 4)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

붙임 8

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 - 임상증상 기록지

대상자명	증상	1일차	2일차	3일차	4일차	5일차	6일차	7일차	~	14일차	15일차	16일차	17일차	~	종료일
예시 000	체온	오전 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
		오후 38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
	① 기침	√	√	√				√			√				
	② 인후통				√	√						√	√	√	
	③ 호흡곤란	√	√	√											
	④ 객담	√					√					√			
	⑤ 기타		철사												
	체온	오전													
		오후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
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
	⑤ 기타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
※ 접촉되지 않은 입소자 및 종사자이므로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

붙임 9

접촉자 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 - 임상증상 기록지

대상자명	증상	1일차	2일차	3일차	4일차	5일차	6일차	7일차	8일차	9일차	10일차	11일차	12일차	13일차	14일차
예시 000	체온	오전 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
		오후 38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
	① 기침	√	√	√				√			√				
	② 인후통				√	√							√	√	√
	③ 호흡곤란	√	√	√											
	④ 객담	√					√					√			
	⑤ 기타		철사												
	체온	오전													
		오후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
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
	⑤ 기타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
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관련 정보

*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

정 의	• SARS-CoV-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
질병분류	• 법정감염병 :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• 질병 코드 : U07.1
병원체	• SARS-CoV-2 :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
전파경로	• 현재까지는 비말,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-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-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, 코, 입을 만짐
잠복기	• 1~14일 (평균 5~6일)
진단기준	• 환자 :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-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-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증상	• 발열, 인후통,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
치료	• 대증 치료 : 수액 보충,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•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
치명률	• 치명률은 1~2%이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• 단, 고령,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,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, 사망 초래
관리	<환자 관리> • 표준주의, 비말주의, 접촉주의 준수 •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<접촉자 관리> •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
예방	• 백신 없음 • 올바른 손씻기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 등 실시 • 기침 예절 준수 -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-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•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
참고 2 사회복지시설 종류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기관 포함

소관부처	시설종류	세부종류		관련법
		생활시설	이용시설	
보건복지부	노인복지시설	◦ 노인주거복지시설 ◦ 노인의료복지시설 ◦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◦ 재가노인복지시설 ◦ 노인여가복지시설 ◦ 노인보호전문기관 ◦ 노인일자리지원기관	「노인복지법」
	복합노인복지시설	◦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가능	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노인	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	아동복지시설	◦ 아동양육시설 ◦ 아동임시보호시설 ◦ 아동보호치료시설 ◦ 자립지원시설 ◦ 공동생활가정	◦ 아동상담소 ◦ 아동전용시설 ◦ 지역아동센터 ◦ 아동보호전문기관 ◦ 가정위탁지원센터	「아동복지법」
	장애인복지시설	◦ 장애인형별 거주시설 ◦ 중증장애인가족시설 ◦ 중증장애인가족시설 ◦ 장애인단가 거주시설 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◦ 피해장애인쉼터	◦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◦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◦ 장애인요양시설 ◦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	「장애인복지법」
	어린이집		◦ 어린이집	「영유아보육법」
	정신보건시설	◦ 정신요양시설 ◦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	◦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	노숙인시설	◦ 노숙인자활시설 ◦ 노숙인재활시설 ◦ 노숙인요양시설	◦ 노숙인종합지원센터 ◦ 노숙인임시보호시설 ◦ 노숙인급식시설 ◦ 노숙인치료시설 ◦ 쪽방상담소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	사회복지관 결핵·한센시설	◦ 결핵·한센시설	◦ 사회복지관	「사회복지사업법」
	지역자활센터		◦ 지역자활센터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	다함께돌봄센터		◦ 다함께돌봄센터	「아동복지법」
여성가족부	성매매피해지원시설	◦ 일반지원시설 ◦ 청소년지원시설 ◦ 외국인지원시설 ◦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	◦ 자활지원센터 ◦ 성매매피해상담소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성폭력피해보호시설	◦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	◦ 성폭력피해상담소	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가정폭력보호시설	◦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	◦ 가정폭력상담소 ◦ 긴급전화센터	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한부모가족복지시설	◦ 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 ◦ 부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 ◦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) ◦ 일시지원복지시설	◦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	다문화가족지원센터		◦ 다문화가족지원센터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	건강가정지원센터		◦ 건강가정지원센터	「건강가정기본법」
	청소년복지시설	◦ 청소년쉼터 ◦ 청소년자립지원관 ◦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◦ 청소년회복지원시설	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